

## 책임준공 확약서

2018년 11월 16일

량대부 주식회사 귀중

(이하 아래에서 언급된 대출약정서상의 “대주” )

### 전 문

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(이하 “당사”)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-10번지(이하 “본건 사업부지”) 빌라 재건축 사업(이하 “본건 사업”)에 관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(이하 “본건 공사”)의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, 2018년 11월 16일 두정 주식회사(이하 “차주”)가 대주로부터 원금 총액 금 일억(W100,000,000-)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(추후 변경·수정·대체되는 약정을 포함하며 이하 “대출약정서”)을 체결하였습니다.

### 제1조 정의

본 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,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확약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.

### 제2조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

- ① 당사는 본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별첨1. 예정공정률표(이하 “예정공정률표”)에 기재된 예정공정률(이하 “예정공정률”)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- ② 한편, 당사는 천재지변, 내란,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급불능,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, 본건 공사에 관한 인·허가 요건의 불비 또는 미비, 공사비 지급 연체,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위반, 민원 등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건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,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[칠](7)개월까지 이 약정에서 요구하는 조건,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본건 공사를 완료할 것임을 확약하는 한편,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**제6조 민원사항의 해결**

당사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, 안전사고, 인근시설 또는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, 물적 피해, 기타 공사성 민원에 대해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해결 및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**제7조 금지행위**

당사는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차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대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니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**제8조 진술 및 보증**

당사는 본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의 내부 승인절차를 모두 취하였고, 본 확약서는 유효하게 당사를 구속합니다. 또한 본 확약서의 작성 및 이행은 관련 법령, 당사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, 본 확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회사의 내부 승인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. 또한 본 확약서에 따른 당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의 모든 당사자,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새로운 대출금융기관,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

이에 당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각 확약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, 아래와 같이 기명·날인한 후 이를 수신인에게 제출합니다.

2018년 11월 16일

위 확약인

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

서울특별시 송파구

대표이사 임

